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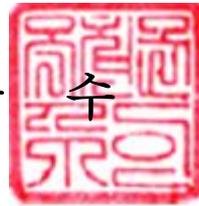
옥천군 공고 제2019 - 710호

옥천군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옥천군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8월 9일

옥 천 군 수



1. 조례명 : 옥천군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2. 개정이유

- 옥천군 표창 조례 및 모범공무원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,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관련 조례명 일괄 변경 및 개정조례 사항 반영
 - 가. (변경 전) 「옥천군포상조례」를 (변경 후) 「옥천군 표창 조례」로 일괄 변경
 - 나. 안 제3조(선발) 군 인사위원회 심의를 옥천군공적심사위원회로 변경
- 상위 규정(모범공무원 규정)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사상의 특혜 조항 삭제
 - 가. 안 제4조(인사상의 특혜)

4. 의견 제출

-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8월 29일까지 옥천군수(참조 : 자치행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전자공청회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dash2youm@korea.kr

2) 주소 :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

3) 팩스 : 043-731-1987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자치행정과(전화 043-730-3171, 317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충청북도 옥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. 붙임

- 옥천군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
- 의견서 양식 1부.

옥천군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옥천군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옥천군 표창 조례」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모범공무원”을 “모범공무원(이하“모범공무원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실과 소장”을 “실과소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있어서의”를 “있어서”로, “대상자의행정 직무내용”을 “대상자의 행적, 직무내용,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「옥천군포상조례」에 의하여”를 “「옥천군 표창 조례」에 따라”로, “자도”를 “사람도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(대통령령 제18676호)에 의한”을 “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군 인사위원회”를 “옥천군공적심사위원회”로 한다.

제4조를 삭제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「모범공무원규정」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수당액”을 “모범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「모범공무원 규정」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금액”으로, “다음달”을 “다음 달”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1”을 “모

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, “때에는 상여금은”을 “때에 상여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상여금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”를 “상여금은 환수하지 않는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<u>옥천군포상조례</u>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한 <u>모범공무원(이하“모범공무원”이라 한다)</u>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추천) ① <u>모범공무원</u>은 옥천군(이하“군”이라 한다)의 <u>실과 소장</u> 및 읍면장이 추천한다.</p> <p>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 <u>서의</u>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<u>대상자의 행정 직무내용 근무조건</u>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.</p> <p>③ 「<u>옥천군포상조례</u>」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<u>자도</u>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. 다만, 「<u>모범공무원규정</u>」(대통령령 제18676호)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.</p> <p>제3조(선발) 모범공무원은 <u>군 인사위원회</u> 심의를 거쳐 매년 12명 이내로 선발한다.</p> <p>제4조(인사상의 특혜) 모범공무원</p>	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<u>옥천군표창조례</u>」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추천) ① <u>모범공무원(이하“모범공무원”이라 한다)</u>--- <u>실과소장</u> -----.</p> <p>② ----- <u>있어서</u> ----- --- <u>대상자의 행적, 직무내용,</u> ----- -----.</p> <p>③ 「<u>옥천군 표창 조례</u>」에 따라 ----- <u>사람도</u> ----- ----- --- <u>에 따른</u> ----- -----.</p> <p>제3조(선발) ----- <u>옥천군공적심사위원회</u> ----- -----.</p> <p><삭 제></p>

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.

1.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로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
2. 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

제5조(상여금지급)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「모범공무원규정」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6조(상여금지급의 중지)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은 지급을 중지한다. 다만, 이미 지급한 상여금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.

1. ~ 4. (생략)

제5조(상여금지급) ① 모범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「모범공무원 규정」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액-----

----- 다음 달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상여금지급의 중지)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----- 때에 상여금 -----
----- 상여금은 환수하지 않는다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- 규 칙 명 : 옥천군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전 화 번 호 :

규 칙 안	의 건